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
- 따라서 현행 주택 조례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을 삭제함(종전의 제3조)
-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삭제함(종전의 제4조)
- 안전관리비용 지원 및 지원대상 선정을 삭제함(종전의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를 제3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5조를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 개선과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을 평가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하여 우수단지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제〉
제4조의2(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 ④ (생략)

4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구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비용 지원) 시장
은 법 제43조의3에 의한 공동
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
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
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구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
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구청
장이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의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
과 년 수를 예외로 할 수 있
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300세대 미만으로서 승강기가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미설치된 공동주택

3. 3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 아닌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건축물

②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7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제8조(위원의 임기) ① ~ ② (생략)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략)

제10조(회의) ① ~ ③ (생략)

제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음)
제11조(소위원회) ① ~ ② (생략)	제8조(소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 ② (생략)	제9조(간사 및 서기)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생략)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현행과 같음)
제14조(수당 등) (생략)	제11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세칙) (생략)	제12조(운영세칙) (현행과 같음)

참고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참고법령	해당없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재정수반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

4. 작 성 자

○ 건설교통위원회 정 수영 의원